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08. 1. 24 (목) 10:30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이영복 의원외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8년 1월 14일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4일

3. 제안 이유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남북교류에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의 경우 교류실적이 저조 할 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충청북도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으로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인도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구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북한에 진출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 (2) 기금의 조성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함.
- (3) 기금의 용도는 남북농업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라.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위원은 남북농업교류협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남북교류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충청북도의회 의원, 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 (3) 위원회의 기능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함.
- (4)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마.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경우 교류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 교류사업 범위가 문화·체육·학술·경제분야 등 다양한데 비해 이번 조례안이 농업교류 사업에만 한정하는 것과 기금설치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및 기금의 사용용도등에 대해서 신중한 심의·검토가 요구되며, 시행상 문제점이나 향후 기금운영 방향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등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